

제14회 관광벤처사업 예비부문 모집 공고

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「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」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2월 1일

I 모집개요

- 주최/주관** : 문화체육관광부/한국관광공사
- 사업목적** :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여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지원대상** : 공고일 기준('23.2.1.)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(재)창업자
- 모집유형**

모집유형	개념	예시
관광체험 서비스	정보탐색, 이동, 숙박, 체험 등 관광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·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I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• 여행관련 물품 대여 및 가격비교 • 관광상품(숙박, 항공 등) 예약 플랫폼 • IoT 짐배송, 키오스크 서비스 등
실감형 관광콘텐츠	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테마여행 상품(한류, 미식, 반려동물, 공연, 캠핑, 쇼핑, 의료관광, MICE 등) • AR/VR, 메타버스 등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•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
관광인프라	오프라인 기반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테마공원, 목장·농원 등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 및 서비스 • 공유자동차, 킥보드 등 이동수단 및 시스템
관광딥테크	디지털화, 기술 지원을 통해 관광 업계의 생산성·효율성을 높이는 B2B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사자원관리(ERP), 고객관리(CRM), 숙박운영 관리(PMS), 블록체인, SaaS 기반솔루션 등 활용 관광기업 경영 관련 기술 제공 •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위치정보시스템(GPS) 등 데이터 기술 활용 B2B 서비스 등

- ① 창업 아이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전 신청
- ② 융·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
- ③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지원내용** :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, 특화 프로그램 등
- 지원기간** : 협약 후 7개월 이내(2023년 5월 ~ 2023년 11월 예정)
- 선정규모** : 35개 내외

□ 지원자격

-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계획 중인 예비(재)창업자로 사업 공고일(2023.2.1)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- **예비창업자** : 공고일 기준 사업체(개인, 법인)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
- **공동대표** : 공동대표로 창업 예정인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예비창업자 인정범위를 충족
- **예비(재)창업자** : 창업경험이 있으나 폐업한 자로 예비창업자 인정범위에 충족하는 자

예비창업자 인정범위

- 가. 기존 사업자 폐업 후, 이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
- 나.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3년이 경과 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
 - ※ 공고일('23.02.01) 기준으로 폐업일 경과 기간 산정
 - ※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 기준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sc.kostat.go.kr 참조)

□ 지원 제외대상

-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
-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

◆ 지원제외 대상 업종

- ①일반유희주점업 ②무도유희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그 밖에 1-3에 준하는 업종
-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 kssc.kostat.go.kr) 참조

- 공모전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,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

◆ 예외조건

- 공모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지원가능
 - * 단, 기존 수혜사업 종료 후, 공사 지원금 사용 가능
- 지자체 단독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

-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중복수혜 범위

◆ 관광벤처사업 공모 중복수혜 범위

- 관광벤처사업 공모에 참가하여 동일부문에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◆ 한국관광공사 창업사업화지원 중복사업 범위

- 관광기업혁신바우처, 관광엑셀러레이팅, 관광글로벌챌린지프로그램, 관광플러스팁스, 관광두레,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(부산,인천,대전세종,경남,광주,울산,경북,전북), 이을프로젝트, 여행업계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등
-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, 인건비, 사무공간 지원 등의 경우는 신청 가능

- 기 출원·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·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
-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
◆ 예외조건 <공모 접수 마감일 '23.3.3 기준, 증빙자료 제출 필수>

-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②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

-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

◆ 예외조건 <공모 접수 마감일 '23.3.3 기준, 증빙자료 제출 필수>

-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
-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-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* 근로기준법 위반, 공정거래행위 위반,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

□ **지원기간** : 총 7개월 이내 (협약 체결일 ~ '23.11월 예정)

□ **지원내용** :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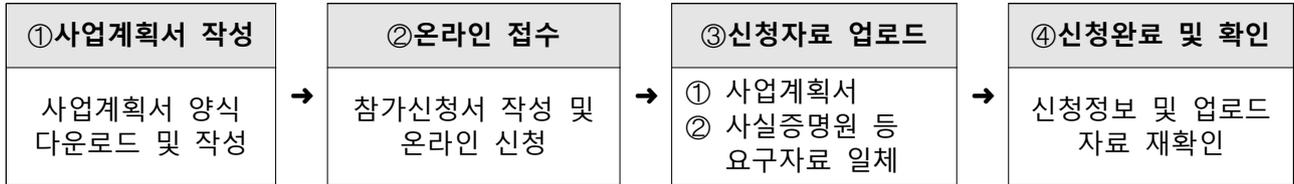
구분	지원내용						
<p>사업화자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화지원금 규모 : 평균 4.5천만원 (최대 7천만~ 최소 3천만) *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 ▪ 총사업비 구성 : 사업화지원금 + 자부담(지원금의 10% 현물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67 680 1461 770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총사업비(예)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사업화지원금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자부담(현물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7백만원</td> <td>70백만원</td> <td>7백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▪ 사용기간 :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가능(~'23.11월) ▪ 사용기준 : 광고선전비, 인건비, 외주용역비 등 불임 참고 	총사업비(예)	사업화지원금	자부담(현물)	77백만원	70백만원	7백만원
총사업비(예)	사업화지원금	자부담(현물)					
77백만원	70백만원	7백만원					
<p>특화 프로그램 (빌드업 프로그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창업교육 :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▪ 컨설팅 : 벤처기업-공사-컨설턴트 3구조 밀착 관리 ▪ 네트워킹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B2G 네트워킹) 공사 및 지자체 사업 연계를 위한 B2G 네트워킹 프로그램 - (Final 데모데이) 관광벤처 대상 Seed, Pre-A 위주 1:1 투자 매칭 지원 - (알럼나이) 1~14회 관광벤처기업들 간 협업을 위한 알럼나이 ▪ '컴퍼니빌더(Company-Builder)' 프로젝트 : 5개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테크기업, 국내 여행 플랫폼 등과의 1:1매칭 및 밀착관리로 컨설팅, 투자유치 지원 ▪ 성과평가 : 20여개 우수기업 상장 시상 및 시상금 지급 						
<p>홍보·판로개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홍보마케팅 : 컨설팅, 광고지원(디지털 및 옥외 등),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연중 지원 						
<p>다자간 협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커넥트(CONNECT) : 관광벤처 다자간 협업 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부문, 기업, 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서비스 및 상품혁신의 기회 제공 * (4대 협력분야) 글로벌 시장진출, 지역현안 해결, 기술협력, 성과공유 ▪ 관광기업 이음주간 : 데모데이, 1:1밋업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과 투자자, 지자체, 글로벌 기업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						
<p>투자유치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관광벤처사업 공모전' 선정기업은 문체부에서 조성한 「관광기업 육성펀드」의 투자대상에 포함 						
<p>예비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예비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 ('26.12.31까지) 						

IV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공모기간** : 2023년 2월 1일(수) ~ 3월 3일(금) 14:00시 까지

□ **신청방법** : 온라인 접수 (contest.tourbiz.or.kr), 우편접수 불가



□ **1차 제출서류(접수마감일, 3.3까지)**

제출서류		제출방법	비고
참가신청서		온라인 작성 및 제출	공모전 신청 웹 사이트 (contest.tourbiz.or.kr)
개인정보제공동의서		온라인 제출(PDF 파일로만 제출) ※ 공사 제공양식 준수	
사업계획서 및 참고자료			
창업경험이 없는 자	사실증명 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	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을 스캔하여 PDF로 제출 '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' 으로 선택하여 제출	※ 유의사항 : 발급일자는 반드시 '23.2.1 이후. 온라인 발급 시 3시간 내외 소요되어 접수마감 전 사 전 준비요망 ①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②오프 라인 관할 세무서
폐업경험이 있는 자	사실증명 (총사업자 등록내역)	①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을 스캔하여 PDF로 제출 ②모든 폐업사업의 '폐업사실증명원' 제출	
가점 서류 (해당자에 한함)	주민등록 등본 (청년우대)	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스캔하여 사업계 획서 별첨에 첨부	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

□ **2차 제출서류(서류평가 합격자 대상, 4월 7일까지)**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2차 발표자료	공사 제공양식 준수(PDF 파일 제출)	
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	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,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발급된 것만 인정 ※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, 유효한 증 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함	
창업유지확약 동의서	공사 제공양식(PDF 파일로 제출)	
근로기준법 준수 확인서	공사 제공양식(PDF 파일로 제출)	
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동의서	공사 제공양식(PDF 파일로 제출)	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관광관련 사업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
-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을 창업할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폐업 후 3년이 미경과한 시점에 동일업종(표준사업분류 상 세세분류 5자리 동일)으로 동 사업 참가 불가
- '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정부부처 창업지원사업*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가능(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)
 - * (창업지원사업) 중소벤처기업부의 '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지원 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 - * 동시 선정 시, 협약체결일 이전에 1개 사업 선택하여야 하고,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-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
-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
- 신청마감일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-3일 전 신청 권장
- 사업계획서는 접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만 허용되며,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
- 공모전 신청은 창업기업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, 작성항목 중 미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,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가점 불인정
- 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.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-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·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
-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·도용하거나 대필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,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 종료 후 파기
-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이후(공고일 포함, '23.2.1.~)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

V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방법 및 기준

- 평가절차 : 자격검토→ 1차 서류평가→ 2차 발표평가(1.8배수)
- 평가기준 : 사업의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전략,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우대사항 :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1점 부여

< 가점항목 및 점수 >

가점항목	지원내용	점수
청년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등본 상 '83.02.02 이후 출생자 * 관련근거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11 	1점

*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며, 항목별 증빙서류 미 제출 시 가점 불인정

□ 최종선정

-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
- *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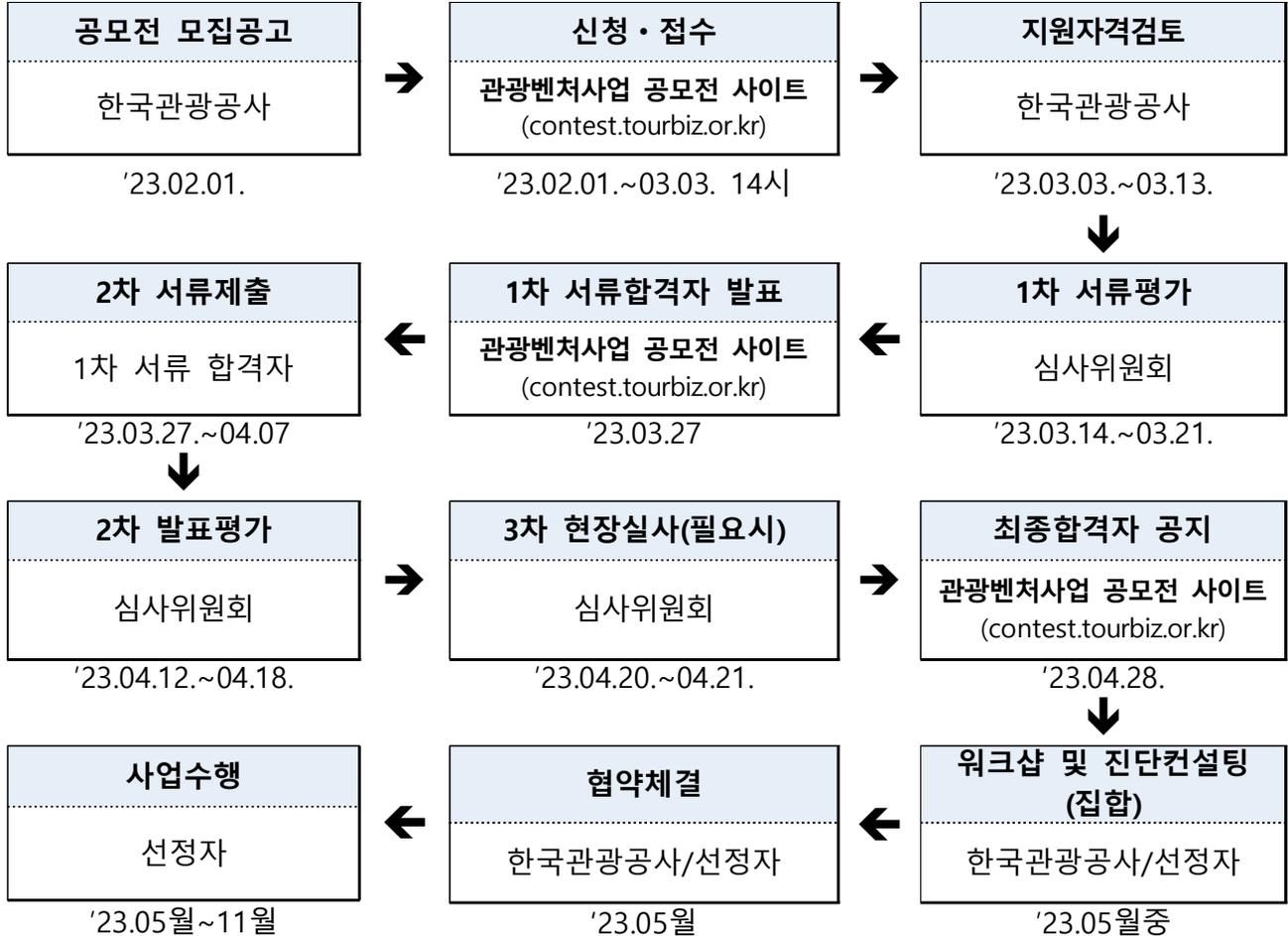
□ 평가제외 대상

-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(예시: 초기 또는 성장관 광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예비관광벤처에 접수하는 경우)
- 2차 발표평가 시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
-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

< 공모전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>

구분	대상자	주요내용
지원자격검토	공모전 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출서류, 예비관광벤처 지원자격 등 검토 - 사업계획서 등 표준양식 준수 ※ 복수의 사업자를 폐업한 사실이 있거나, 공고일 이후 창업한 경우, -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(계속사업자)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(폐업사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 입력사항 검토
1차 서류평가	지원자격검토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평가방식 : 신청자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▪ 평가기준 :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전략,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 연관성 등
1차 합격자 공지 및 추가서류 제출	1차평가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차 발표평가 준비 ▪ 체납사실 등 검토 - 납세증명서, 창업·유지확약 동의서, 공동대표 사업참여 동의서, 법인사업의 경우 주주명부, 근로기준법준수 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활용동의서
2차 발표평가 (1.8배수)	1차평가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평가방식 : PT발표 및 질의응답 * 참가신청서 대표자만 허용, 팀원 1명 배석가능(참석자 신분증 지참) ▪ 평가기준 :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전략,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 연관성 등
최종선정	최종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

□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□ 신청문의

- 문의처 :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
- 연락처 : 02-6953-1310
- 이메일 : tourbiz_contest@knto.or.kr

□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

- 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,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
- 예비 관광벤처부문에 선정된 예비(재)창업자는 협약종료 2개월 이내 반드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그 대표는 예비(재)창업자 본인이어야 함 (단, 개인은 간이과세자 등록불가, 법인의 경우 각자대표 불가)
- 선정자는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 *지정된 은행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및 예비벤처 지원자격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◆ 창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◆

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'형법',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 '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'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벌금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-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, 협약취소 및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,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
- 고의 거짓 등의 방법을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음

□ 기타 안내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'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'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법령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하며, 운영사무국은 응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

구분		집행기준	비고
재료구입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품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구입비 ·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수량 구매가능 	
외주용역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용역비 · 선금인정(최대 50%, 이행보증증권 혹은 지급각서 必) 	
유형자산취득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용 가능한 기계, 설비,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 ·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납품 완료건에 한정 · 생활가전,통신기기,일반사무용품 구입 불가 · PC 및 노트북은 신규인력 채용 시 인당 1개 한정 · 건물, 토지,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집행(시설비, 인테리어비 등)은 제한 받을 수 있음 	
무형자산취득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업재산권, 특허, SW등록 저작권 등 출원·등록 경비 	
인건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및 신규직원 1명당 기존직원 1명 인건비 인정 (인당 월 250만원 한도) ·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지원불가 ·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 	총 재무지원금의 50% 초과 집행 불가
지급수수료	기자재 임차비	· 기기, 장비, SW 라이선스 임차료 등, 협약기간 내 인정	
	공간 임차비	·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육료 형태 임차료 집행 불가 · 주택 및 근무좌석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오피스 불가	
	시장반응조사비	· 시장반응 확인 및 홍보를 위한 체험비,입장료,가이드비, 참가자 보상비 등 인정	
	전시회참가비	· 등록비, 부스임차비, 참가비, 장치비 등 인정	
	법인설립비	· 법인설립을 위한 법무 수수료	
	회계감사비	· 공사 지정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	
	세무기장료	· 세무 기장 수수료 지원	월 20만원 한도
여비	해외여비	· 아이템 고도화,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시 집행 비용 (이코노미 기준 해외항공비 실비만 지급)	
교육훈련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· 4대보험 가입인력 한정, 환급비 제외하고 지급 	
광고선전비	홍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(앱), 영상물, 리플릿, 광고게재 등 비용 · 배포용 기프트콘 등 경품 집행불가 	
	팸투어비	·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행사 소요비 지원	
창업활동비		· 창업활동을 위한 국내여비, 소모품 구입 등 활용	월 30만원 한도

※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